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희망의 새시대
http://www.mafra.go.kr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박수진 과장(044-201-1811), 김동현 사무관(044-201-1822)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김진동 과장(044-203-5630), 고상미 서기관(044-203-5631)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2014.6.20) 결과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20(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6.20(금), 14:30～17:10,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경기도 의왕) 대강당

○ 금번 공청회에는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후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 참고 1 : 공청회 개최 개요)

□ **공청회 1세션에서는「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함**

○ 주제발표는 1)쌀 시장 개방 현황, 2)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 평가, 3)주요국(일본·대만·필리핀)의 관세화 사례와 시사점, 4) 관세화 여부와 관련된 쟁점 검토(2015년 관세화 유예 재연장 가능성, 관세상당치 계산의 적정성, 관세화시 TRQ 초과 수입가능성, FTA 협상과 쌀 관세화, DDA 협상과 쌀 관세화,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경제적 효과 비교) 순으로 구성됨

○ 발표자인 송주호 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의 대안으로 관세화 또는 WTO 설립협정상 의무면제(waiver) 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제하고, 각각의 방법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여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어느 대안이 유리한지 선택하고, 언젠가 관세화할 때를 대비하여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발표를 맺음

* (관세화) TRQ 증량부담 완화 ↔ 수입량 급증에 대한 우려
(의무면제) 수입제한 유지 ↔ TRQ 증량 부담, 한시적 조치

□ **공청회 2세션에서는 주제발표자를 포함하여 생산자 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패널 간*에 토의를 진행한 후, 전체 토론자와 방청객들 간에 질의·응답이 진행됨**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형 교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이태호 교수,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량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통상정책심의관

○ 농업인단체 중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현상유지, 의무면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MMA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관세화 유예 방안을 고려하기 보다는 관세화를 하되 쌀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및 FTA/TPP 협상에서 쌀 양허를 제외한다는 대국민 약속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현재 고려 가능한 대안은 관세화 또는 의무면제(waiver)를 통한 관세화 유예의 두 가지 방안이 있으나, TRQ 증량의 부담을 감안할 때 관세화를 선택하고 고율관세 산정 및 쌀 산업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함

□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그간 진행된 지역 설명회, 토론회, 전문가 포럼 등의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쌀 산업에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향으로 쌀**

관세화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첨부자료

- 참고1 : 공청회 개최 개요
- 참고2 : 주제발표문 요약
- 참고3 : 패널토의 요약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044-203-1811/1822),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044-203-5630/56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공청회 개최 개요

□ 일시 : 2014년 6월 20일(금), 14:30 ~ 17:10

□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 의왕) 인재개발원 대강당

□ 세부 운영계획

제 목	내용 및 참석자(안)
개 회 식 **(14:30~14:40)**	•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자 • 인사 말씀 :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보
1세션 : 주제 발표 **(14:40~15:20, 40분)**	•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
2세션 : 종합 토론	• 주재 : 농정연구센터 정영일 이사장
패널 토의 **(15:20~16:30, 70분)** *** 토론자**	• 생산자(2인)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 전문가(3인)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형 교수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이태호 교수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
질의 응답 **(16:30~17:10, 40분)** *** 토론자 + 발표자**	• 정부(2인) -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량정책관 -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통상정책심의관 * (질의응답) 서면질의(사전접수) 및 방청석 질의 답변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참고 2 주제발표문 요약[「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

□ 쌀 시장 개방 현황

○ 관세화는 UR 협정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며, 관세화 전환은 2004년의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보다는 부담이 적음

□ 2004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평가

○ TRQ 수입물량 증가로 수급에 큰 부담, 소비자들의 수입쌀 선호는 높지 않음

○ '05~'13년간 TRQ 운용 결과, 관세율을 380% 이상 부과하였다면 TRQ 초과 수입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

□ 주요국의 관세화 사례와 시사점

○ (**일본**) 이행기간 만료 2년 전 관세화하기로 결정, 관세율 341엔/kg 적용, 관세화 이후 초과수입 물량은 200톤/년 미만

○ (**대만**) 관세화 유예연장을 포기하고 '03년부터 관세화 단행, 관세율 45NT$/kg 적용, 관세화 이후 초과수입 물량은 500톤/년 미만

○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연장(~'12) 후, 5년간 관세화 유예 재연장을 위해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의무면제(waiver) 신청

□ 관세화 여부와 관련된 쟁점 검토

○ (**'15년 관세화 유예 재연장 가능성**) 관세화 유예조치는 UR 농업협정 4.2조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한시적 예외.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려면 필리핀처럼 의무면제(waiver) 신청을 해야한다고 판단

○ (**관세상당치 계산의 적정성**) 농업협정문 부속서 5에 관세상당치 계산 방법 규정. 동 공식에 부합하면서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고율관세 확보가 중요

○ (**관세화시 TRQ 초과수입 가능성**) 관세화의 경우 TRQ 이외 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국제쌀값, 환율, 국내쌀값, 관세율, 품질격차 등에 좌우

○ (**FTA 협상과 쌀 관세화**) TPP에서 쌀을 양허 제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많으나, 기본적으로 품목별 양허내용은 관세화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

○ (**DDA 협상과 쌀 관세화**) '13년 small package가 타결되었으나 향후 타결전망은 매우 불투명. DDA가 타결된다면 쌀 관세화 시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림자 감축을 통해 영향을 미침

○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경제적 효과 비교**) 어떤 대안이 국내 쌀 산업보호에 더 유리한지(쌀 수입량이 적은지) 여부를 판단. 관세화 유예의 경우는 10년간 TRQ를 최소 1.5~2배 증량해야 할 것으로 전망

참고 3 패널토의 요약

□ 손재범(한농연 사무총장)

○ (한농연 입장) 1)관세화와 관세화 유예(waiver) 중, MMA 물량이 급증할 수 있는 의무면제(waiver) 방안은 국내 농업에 큰 부담, 2)관세화 이후 가변성이 많은 만큼 쌀 경쟁력 강화 대책마련 필요, 3)농가소득 안정방안 마련 필요, 4)추가적인 외국쌀 수입에 대한 현장 농업인의 불안감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 노력 필요

○ (요구사항) 1)기존 MMA 물량으로 대북지원·해외원조 가능한 권리 확보, 2)FTA/TPP 협상에서 쌀 양허를 제외한다는 대국민 약속, 3)농업정책금리 인하(3%→1%), 4)국내외산 쌀 혼합금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5)동계논 이모작 직불제 단가 인상, 6)쌀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 ㅏㅎ대(전농 정책위원장)

○ 식량자급률 추락, 쌀 자급률 100% 붕괴, 고율관세의 가변성 등 감안하여 쌀에 대해서는 식량주권·농업유지 등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함

○ 농업협정문에는 '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쌀 개방 여부는 협상에 달려있으며, 필리핀·인도의 사례를 본받아 다양한 방식(현상유지, 의무면제, 관세화 등)을 염두에 두고 협상전략을 세워야 함

○ 쌀 협상을 위해 국회-정부-농민이 함께 협의하는 WTO 삼자합의체 구성, 비준동의안 수준의 국회 사전처리 등이 필요함

□ 이재형(고려대 교수)

○ WTO 농업협정에 따른 유예 재연장은 불가능하고, 쌀 관세화는 농업협정상 의무로서 DDA 협상과는 별개이므로(현상유지 불가능),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 관세화 의무를 부담함

○ WTO 설립협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의무면제 신청은 가능하나, TRQ 물량의 추가 상향, 다른 상품에 대한 시장장벽 경감 요구 등으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임

○ 관세화를 하더라도 국제가격-국내가격 차이의 축소로 관세가 높은 무역장벽 기능을 하여 TRQ 초과물량 수입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므로, 관세상당치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할 시점임

□ 이태호(서울대 교수)

○ 현재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 : ①관세화 유예종료 선언 후 관세상당치 검증을 받는 것, ②관세화 유예를 유지(waiver)하고 의무수입량을 정하는 협상을 하는 것

○ 해외 선례(일본·대만·필리핀)를 볼 때 WTO 원칙(예외없는 관세화)을 따르는 경우 쌀의 추가 수입량이 적었고,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량 증가 중에는 관세감축이 상대적으로 유리

○ 따라서, 관세화를 선택하고 쌀이 수입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관세상당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 쌀 산업 정책을 다듬어 실행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대책

□ 장경호(녀름 부소장)

○ 쌀 문제는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복합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처음부터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협상장에 나서는 것은 자충수를 두는 것임

* 관세율 협상, 관세화 의무면제를 위한 협상, 한미/한중 협상 등

○ 현상유지를 포함하여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은 논리보다는 정부의 적극적 통상협상 의지에 달린 문제

* 특별대우의 지속 여부에 대해 협상을 제시할 권리, 관세화 의무 위반시에도 심각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음, 통상협상에서 제소·분쟁이 국제사회의 신뢰도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음

□ 김경규(농식품부 식량정책관)

○ 지난 쌀 관세화 유예 20년간 우리의 쌀 산업은 소비·생산·유통 전 부문에서 빠르게 변화해 왔고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음

○ 쌀 관세화 유예종료로 '관세화 vs 일시 의무면제(waiver) 시도' 중 결정할 시기가 도래

- 쌀 소비감소 추세에서 MMA 추가 증량은 우리 쌀 산업에 큰 부담
- 의무면제를 통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의무면제 종료시 관세화 이행 불가피

○ 우리의 쌀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발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

[] 박정수(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

○ 현재 대안은 관세화 이행 또는 한시적 의무면제를 통한 관세화 유예 연장의 두 가지

- WTO 농업협정에 근거한 '특별대우'를 이미 연장한 바 있어, 의무면제를 확보하지 않는 한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른 관세화 이행 필요
- 필리핀의 사례를 볼 때 관세화 유예를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 수반 필요

○ 관세화할 경우 관세감축 가능성 관련,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제외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DDA 협상의 경우 단시일내 타결 전망은 불확실하나 타결되더라도 관세가 감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